

< 변경 대비표 >

1. 정정대상 투자신탁 : 유리베트남알파증권투자신탁[주식]

2. 변경시행일 : 2023.03.16

3. 정정사항

- 최근 결산기 기준 업데이트(투자위험등급 변경 : 2등급 → 1등급)
-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
-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-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

[[간이]투자설명서]

항 목	정정요구·명령 관련 여부	정정사유	정정 전	정정 후
요약정보				
	아니오	투자위험등급 변경 및 정기갱신	- 투자위험등급 : 2등급 -	- 투자위험등급 : 1등급 - 최근 결산기 기준 업데이트 (투자비용, 투자실적 추이, 운용전문 인력)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	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아니오	정보 업데이트	-	2023.03.16 : 투자위험등급 변경(2등급 → 1등급)
5. 운용전문인력	아니오	기준일 현재 갱신	-	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. 투자대상 [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] - 유리베트남 알파증권모투자신탁[주식]	아니오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	- 채권 :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- 자산유동화증권 :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,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<신 설>	- 채권 :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- 자산유동화증권 :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,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- 주식 추가 주1)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운용 방법 가. 수익률 증진 :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,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수수료 수익을 추구

<p>나. 투자제한 [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] - 유리베트남 알파증권모투 자신탁[주식]</p>		<p>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</p>	<p>- 동일종목 투자 : 나. 지방채증권,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주택저당채권유동 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 회사,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30%까지 투자하는 경우</p>	<p>나. 기타 효율적,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주2) 효율적 운용, 보유 자산의 시장 위험 헤지, 환매 대응, 유동성 확대,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차입 을 진행할 수 있음</p> <p>- 동일종목 투자 : 나. 지방채증권, 한국주택금융 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 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한국주택금 용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30%까지 투자하는 경우</p>
<p>10. 집합투자기 구의 투자위험 가. 일반위험</p> <p>라. 이 집합투 자기구에 적합 한 투자자 유형</p>	<p>아니오</p>	<p>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</p> <p>투자위험등급 변경 반영</p>	<p><신 설></p> <p>- 이 투자신탁은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 변동성(연환 산)이 20.73% 이므로 6개의 투자위험 등급 중 위험도가 높은 2등급(높은 위험)으로 분류합니다.</p>	<p>- 증권대차 거래위험 : 증권대차 거래가 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, 관련 담보 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 니다.</p> <p>- 이 투자신탁은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 변동성(연환 산)이 25.04% 이므로 6개의 투자위험 등급 중 위험도가 매우 높은 1등급 (매우 높은 위험)으로 분류합니다.</p>
<p>13. 보수 및 수 수료에 관한 사항 나. 집합투자기 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</p>	<p>아니오</p>	<p>정기갱신 및 주식 추가</p>	<p>-</p>	<p>최근 결산기 기준 업데이트 (기타비용, 증권거래비용, 금융비용 주식 추가)</p>
<p>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. 과세</p>	<p>아니오</p>	<p>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</p>	<p>(5)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① 세액공제 -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 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 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 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 액)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고, 2022년 12월 31일까지 「소득 세법」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 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 거주자는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</p>	<p>(5)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① 세액공제 -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 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 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 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 액)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.</p>

			<p>이내의 금액)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되,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)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.</p> <p>-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.2%에 대해 세액공제.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.5%에 대해 세액공제</p> <p>※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(원천징수세액의 10%)를 포함한 세율입니다.</p> <p>※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종합안내(http://pension.fss.or.kr)의 “과세제도 안내”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	<p>-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.2%에 대해 세액공제.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.5%에 대해 세액공제</p> <p>※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, 지방소득세 포함</p> <p>※ 퇴직연금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
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		
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아니오	정기갱신	-	최근 결산기 기준 업데이트
제4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. 운용자산 규모	아니오	기준일 현재 갱신	-	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

<끝>.